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봉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86

발의연월일: 2020. 12. 31.

발 의 자:전봉민·정동만·백종헌

김도읍・서병수・김희곤

안병길 · 구자근 · 황보승희

양금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격을 갖춘 품질책임자를 두어 제조관리·품질관리·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, 품질관리자는 의료기기 최신규격 및 품질관리·안전관리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품질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서 부실한 내용의 교육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충실한 교육을 통한 품질관리자의 전문성 함양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, 교육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·고시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품질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, 보다 좋은 품질과 안전

성을 갖춘 의료기기가 제조·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·제37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 까지에서"를 "제5항까지에서"로, "등에"를 "요건 및 절차, 운영 등에" 로 한다.

- ④ 제조업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 체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- 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관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본문"을 "본문이나 제2항"으로, "제2항 및 제5항에"를 "제7조제1항에"로 한다.

제3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3의2. 제6조제7항(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

위반하여 품질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

3의3. 제6조의2제4항(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책임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

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6조의4제1항"을 "제6조의2제5항, 제6조의4제1항"으로, "기술문서심사기관"을 "교육실시기관, 기술문서심사기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"를 "교육수료증, 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서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제6조의4제2항"을 "제6조의2제5항, 제6조의4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제6조의4제3항"을 "제6조의2제6항, 제6조의4제3항"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6조의2제4항(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품질책임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교육실시기관 지정·고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 이전에 보 건복지부장관이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제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·고시한 것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6조의2(품질책임자 준수사항	제6조의2(품질책임자 준수사항				
등) ① ~ ③ (생 략)	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		
<u> <신 설></u>	④ 제조업자는 제2항 또는 제3				
	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				
	자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				
	서는 아니 된다.				
<u><신 설></u>	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				
	항 또는 제3항의 교육을 효과				
	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				
	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				
	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실시기				
	관으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				
<u><신 설></u>	⑥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				
	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경				
	우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				
	육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보관				
	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				
	<u>항을 지켜야 한다.</u>				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	<u>⑦</u> <u>제5항까지에서</u>				
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범위, 교					
육내용・시간・방법과 절차, 교					
육비,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	<u>র</u>				
<u>에</u>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	<u>건 및 절차, 운영 등에</u>				

정한다.

제12조(변경허가 등) ① 제조업자는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 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나 인 증을 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)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・수 입업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, 수리업자・판매업 자・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 장・군수・구청장이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, 영업소의 폐쇄,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・수 입・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・제22호 및 제23호

· 제12조(변경허가 등) ①
본문이나 제2항
제7조제1항에
,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
정지 등) ①

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 야 한다.

1. ~ 3.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4. ~ 24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

제37조(지정의 취소 등) 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의4제1 항, 제10조제3항, 제10조의2제1 항 또는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문서심사기관, 임상시험기관, 비임상시험실시 기관 또는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

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 3의2. 제6조제7항(제15조제6항</u>
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
함한다)을 위반하여 품질책임
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
<u>3</u> 의3. 제6조의2제4항(제15조제6
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
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교육을
받지 아니한 품질책임자를 그
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
4. ~ 2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37조(지정의 취소 등) ①
제6조의2제5
항, 제6조의4제1항
<u></u> <u>ग</u>
육실시기관, 기술문서심사기관-

다.	다민	.,	제1호 •	제2호	2	坚是	三
제5.	호에	ठें	개당하면	ユ	ス]정	을
취소	하여	야	한다.				

- 1. (생략)
-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 짓의 <u>기술문서심사결과통지</u> 선, 임상시험결과보고서, 비 임상시험성적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거나 품질관리심사결 과서를 작성 또는 보고한 경 우
- 3. 제6조의4제2항, 제10조제3항, 제10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
- 4. 제6조의4제3항, 제10조제5항, 제10조의2제3항 또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
5. (생략)

②・③ (생 략)

제5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
1. (현행과 같음)
2
교육수료증, 기술문서심
사결과통지서
0 레오크 이오레드컵 레오크 이 4레오
3. <u>제6조의2제5항</u> , 제6조의4제2
<u>항</u>
4. 제6조의2제6항, 제6조의4제3
<u>ŏ</u> }
5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]56조(과태료) ①

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 1의2. (생 략)

 2. ~ 4. (생 략)

 ②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제6조의2제4항(제15조제6)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교육을받지 아니한 품질책임자를 그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

1의3. (현행 제1호의2와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